

현물출자 과세특례신청서

(앞쪽)

신청인 (출자자 또는 출자법인)	① 상호(법인명)	② 사업자등록번호
	③ 성명(대표자 성명)	④ 생년월일(법인등록번호)
	⑤ 주소(본점 소재지) (전화번호:)	
피출자 법인 (임대주택 부동산 투자회사)	⑥ 법인명	⑦ 사업자등록번호
	⑧ 대표자 성명	⑨ 법인등록번호
	⑩ 본점 소재지 (전화번호:)	

현물출자 명세

⑪ 자 산 명	⑫ 소 재 지	⑬ 면 적(㎡)	⑭ 현물출자일	⑮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
계				
⑯ 임대주택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			⑰ 양도소득세의 납부 또는 법인세의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는 금액(⑮ × ⑯)	
계				

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97조의6제9항 및 제97조의8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현물출자 과세 특례신청서를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
제출인 (서명 또는 인)

세무서장 귀하

작성 방법

1. "⑮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"란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작성합니다.
 - 가. 거주자의 경우: 「소득세법」 제93조제2호에 따른 양도소득 결정세액을 적습니다.
 - 나. 내국법인의 경우: 법 제97조의6제1항제2호에 따른 현물출자의 대가 - 현물출자한 자산의 장부가액 금액을 적습니다.
2. "⑯ 임대주택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"란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작성합니다.
 - 가. 거주자의 경우: 거주자가 현물출자한 「소득세법」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 또는 건물 중 제2항에 따라 임대주택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을 적습니다.
 - 나. 내국법인의 경우: 내국법인이 현물출자한 자산 중 제2항에 따라 임대주택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을 적습니다.
3. "⑰ 양도소득세의 납부 또는 법인세의 과세를 이연 받을 수 있는 금액"란을 작성하는 경우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97조의8제6항의 경우에는 "⑮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"란의 금액을 그대로 옮겨 적습니다.